

남극활동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이 용 희

목 차

I. 남극활동상 형사사건의 발생가능성

II. 남극활동에 대한 형사관할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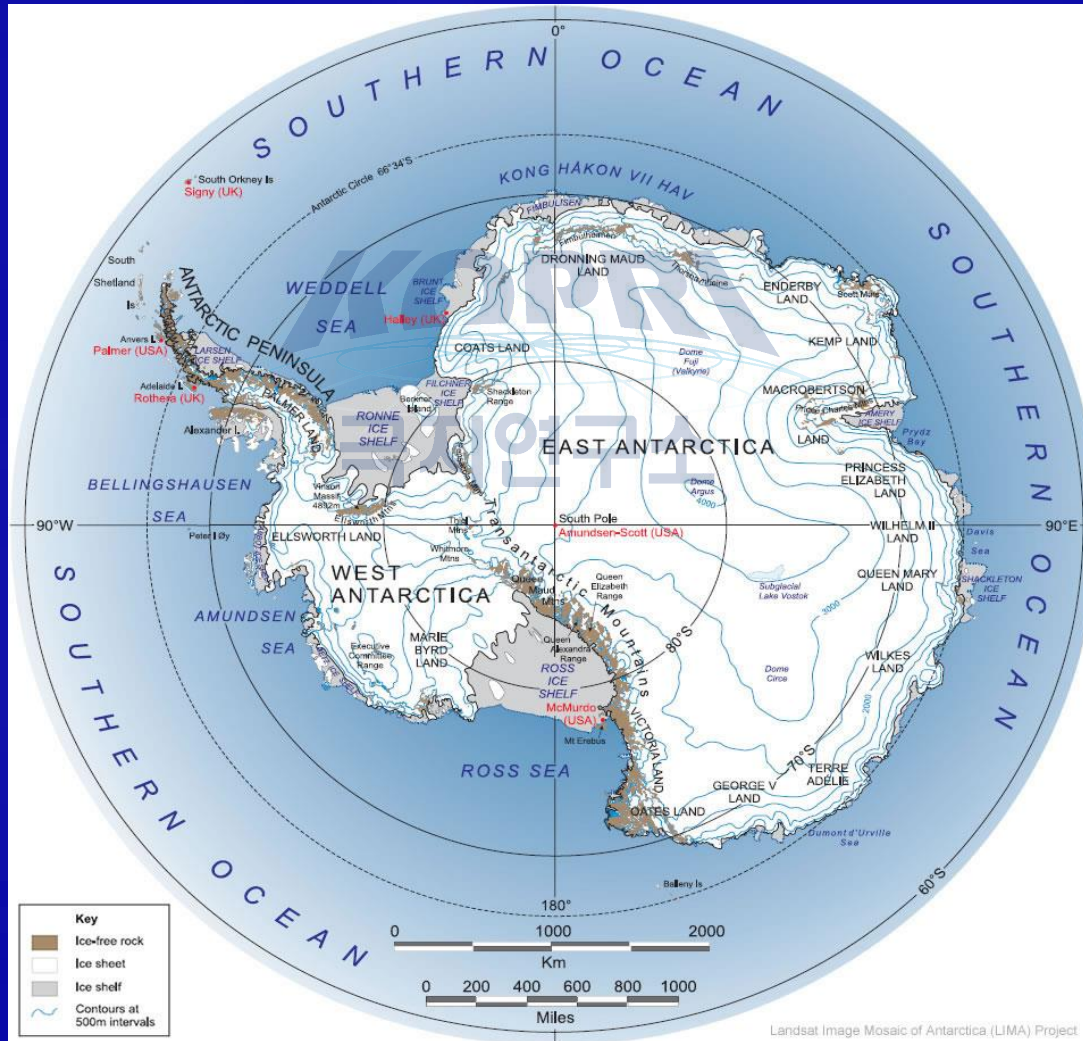
1. Rodney Marks 사망사건

2. Wordi House 침범사건

III. 남극조약체제 및 일반국제법상 형사관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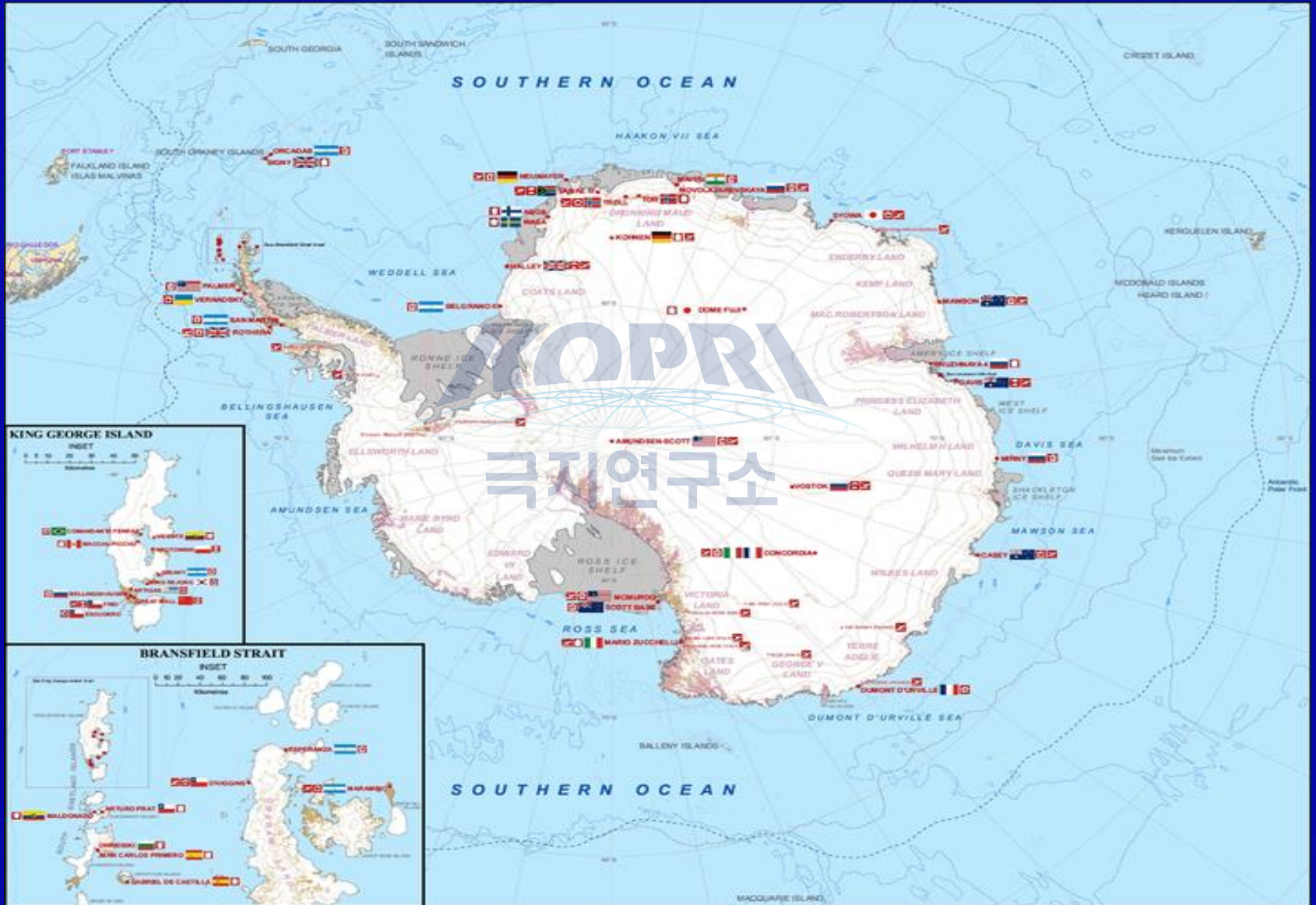
IV. 우리나라 남극활동에 대한 시사점

I. 남극활동상 형사사건의 발생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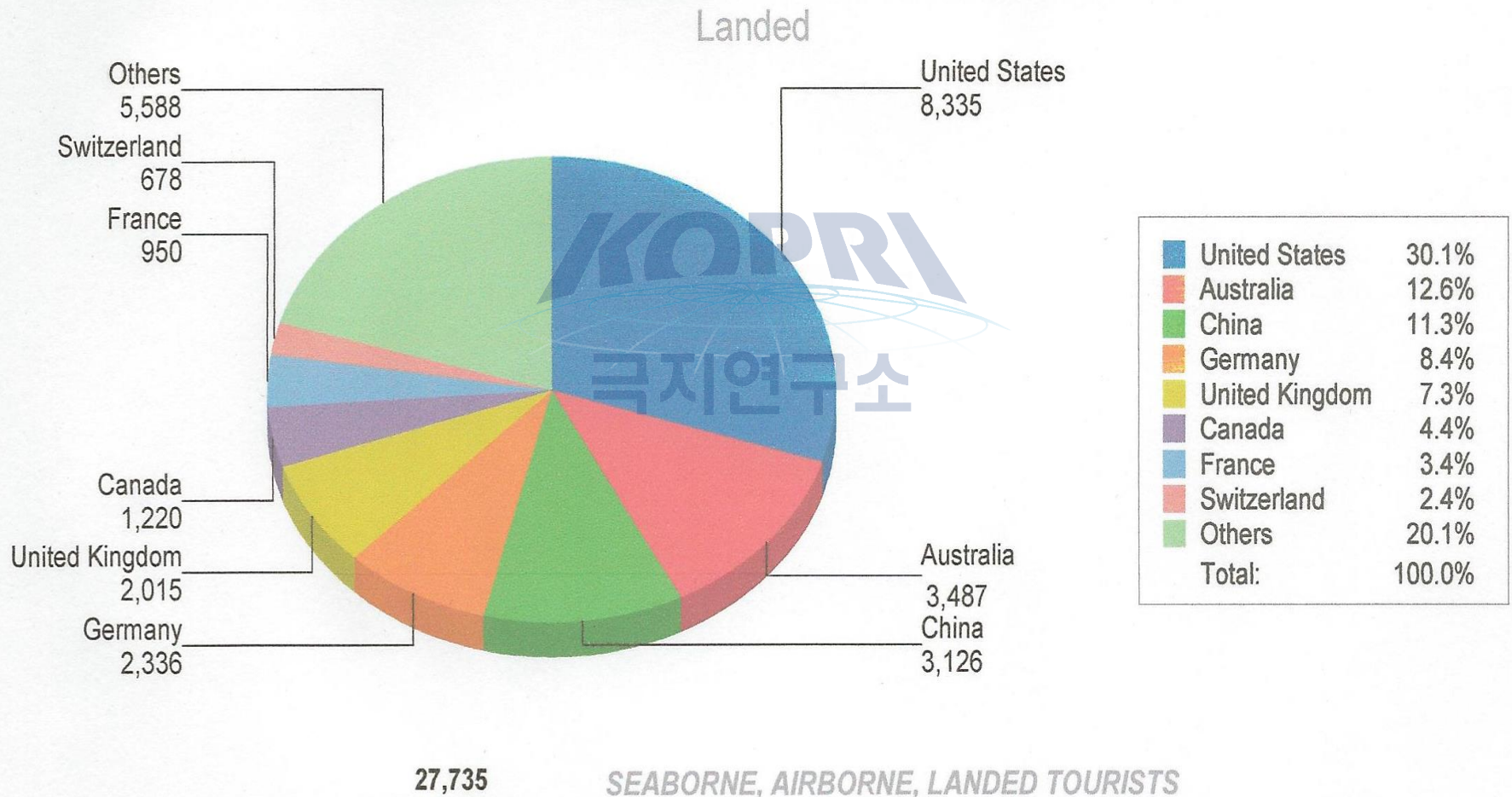
- 남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활동은 다양하며 그 규모도 증가 추세
- 매년 70여개의 연구거점을 중심으로 하계 약 4,400명, 동계 약 1,100명의 연구자가 남극에서 과학조사활동 실시
- 1960년대부터 개시된 관광이 증가 추세(2013-2014 기간 중 약 27,735명 관광)
- 동시에 과학활동 및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선박과 어업활동 선박 등 다수의 선박이 남극해에서 운항
- 이러한 사정아래, 다양한 형사사건이 발생 가능

2014년 현재 남극과학기지(70개)



2013-14 남극관광객 국가별 현황

2013-2014 TOURISTS BY NATIONALITY



- 남극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형사사건의 유형
 - ✓ 남극조약체제에 대한 위반(무허가 활동 등)
 - ✓ 일반적 범죄(살인, 상해, 폭행, 위조, 환경범죄, 선박충돌사고 등)
- 남극조약체제는 형사관할권문제에 대한 분명히 기준 미제시
-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 및 아라온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타국기지에서 활동하는 현황 고려시 형사관할권 문제 발생 가능
- ATCM 은 2012년 회의에서 프랑스 제안으로 “남극조약지역 내 관할권 행사에 관한 회기간 접촉그룹(ICG)”을 설치하였고, ICG는 2014년 최종보고서를 제출
- 영토주권의 불분명, 증거수집의 곤란 등 다양한 문제가 내포된 남극 형사관할권문제 분석 필요성 대두

II. 남극활동에 대한 형사관할권 사례



1. Rodney Marks 사망사건

- 남극지역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남극 형사관할권 논의 시발점
- 호주 국적 천체물리학자 로드니박사는 1997년부터 뉴질랜드 영유권 주장지역에 건설된 미국 아문젠기지에서 시카고대학이 수행하는 천체관측연구사업에 고용
- 2000.5.11 병세가 발병하여 5.12 사망
- 당시 NSF는 자연적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나 사인은 아직 모른다는 입장 발표
- 6개월 경과후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로 시신 운반하여 부검
- 미국과 호주는 뉴질랜드의 검시에 동의



1. Rodney Marks 사망사건

- 부검 결과 메타놀중독으로 인한 사망 확인
- 뉴질랜드 경찰과 검시소 주도로 사건 조사 실시(자살 배제)
- 뉴질랜드 경찰은 NSF와 아문센기지 운영회사가 사건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필요한 사람의 면담과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
- 미국 법무부의 조사에 대해서도 양 기관은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답변 거부
- 2008년 로드니 가족은 추가적인 조사 포기
- 남극지역에서의 증거 획득 곤란으로 미해결사건으로 종결

2. Wordi House 침범사건



- Wordi House는 1947년 1월 Argentine 섬에 건설된 영국의 초기 남극과학기지(1954년 5월 폐쇄)
- 남극환경보호의정서에 의거하여 역사적 유적지 62호로 지정
- 2010. 1. 11 프랑스 2인이 프랑스 등록선 *Esprit d'Equipe*호와 *Eclipse*호를 이용하여 동 유적지 연안에 접근하고, 동 유적지를 훼손
- 이를 발견한 영국남극유적지기금 소속 영국인 작업자가 영국 외무성에 통보
- 2010.1.27 영국 외무성이 동 사실을 프랑스 외무성에 통보

2. Wordi House 침범사건

-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허가없이 남극조약지역에 진입하여 사적지를 훼손한 것은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제8조 및 제1부속서 위반
- 동 위반행위는 프랑스 환경법에 의거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행위
- 프랑스 남부 및 남극영토관리청(TAFF)가 사실 조사 실시
- 행정적 조치로서, 관광선 *Esprit d'Equipe*호에 대해서는 5년간 남극활동 금지조치를 취하였으나 세계일주중인 *Eclipse*호에 대해서는 부선장의 불출석을 이유로 비조치

2. Wordi House 침범사건

- 형사적 조치로서, 2014.2.6 파리 항소재판소는 동 사건에 대해 판결
- 관광선 *Esprit d'Equipe*호의 소유자에게 “남극환경에 최소한 또는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만 유로의 벌금 부과
- 동 사건의 진행과정상 영국 작업자의 증언 청취 및 동 증거의 능력, 영국 외무성이 작성한 서류의 증거능력 등 남극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의 증거 확보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

III. 남극조약체제 및 일반국제법상 형사관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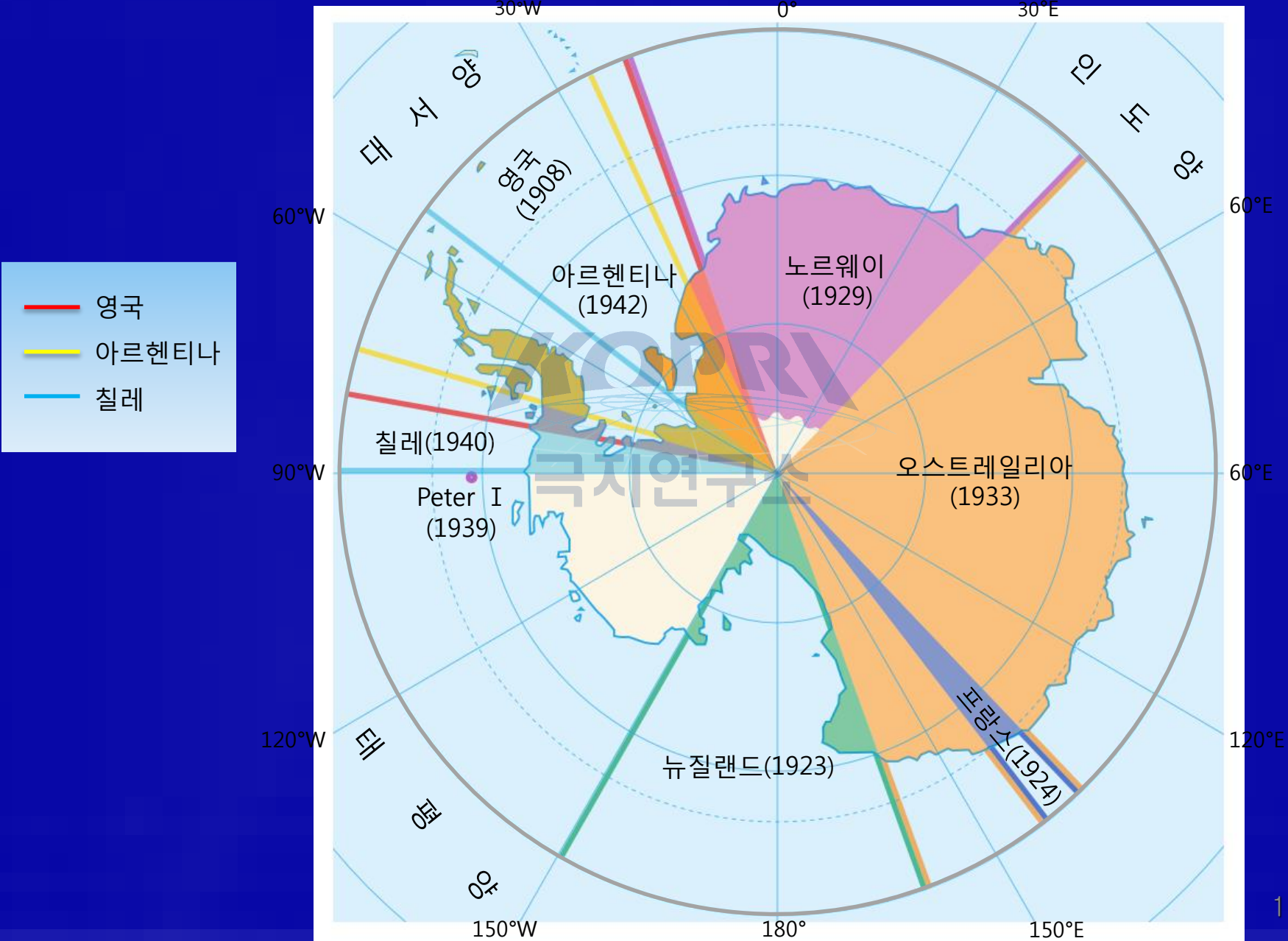
- Q. 어떤 국가가 남극조약지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 남극조약체제상 관할권에 대한 입장

- 남극지역에 대해 7개국이 영유권 주장국, 2개국이 유보
- 남극조약 제4조에 의거 영유권 주장 동결 → 영토주권에 근거한 관할권(속지주의) 행사 곤란
- 남극조약 제8조는 남극활동 감시원, 과학요원 및 동행자에 대한 임무 수행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만 관할권 행사를 국적국에게 부여 → 그 밖의 사안에 대한 관할권 문제는 남극조약 체약당사국회의에서 결정하는 조치에 따라 해결(조치 결정시까지의 당사국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
- 남극조약 제9조에 의거한 관할권문제 해결 조치는 부존재

각국의 영유권 주장 현황



남극조약 제4조

1.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a) 어느 체약당사국이 종전에 주장한 바 있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또는 영토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b) 어느 체약당사국이 남극지역에서의 그 국가의 활동 또는 그 국민의 활동의 결과 또는 기타의 결과로서 가지고 있는 남극지역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의 근거를 포기하는 것 또는 감소시키는 것.

(c) 남극지역에서의 타국의 영토주권,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 또는 그 청구권의 근거를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어느 체약당사국의 입장을 손상하는 것.

2. 이 조약의 발효중에 발생하는 여하한 행위 또는 활동도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남극지역에서의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약의 발효중에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새로운 청구권 또는 기존 청구권의 확대를 주장할 수 없다.

남극조약 제8조

1. 이 조약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감시원과 제3조제1항(b)에 따라 교환된 과학요원 및 그러한 사람을 동행하는 직원은, 이 조약에 따른 자기의 임무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남극지역에서의 모든 사람에 대한 관할권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각자 입장을 침해함이 없이, 남극지역에 있는 동안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들의 국적국인 체약당사국의 관할권에만 복종한다.

2. 남극지역에서의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분쟁에 관계된 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제9조제1항(e)에 따른 조치가 채택될 때까지 상호 수락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즉시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남극조약 제9조

1. 이 조약의 전문에 명시된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 지역에 관한 공동관심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조약의 원칙과 목적을 조장하는 조치를 입안하고, 심의하고, 각자의 정부에 권고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발효후 2개월이내에 캔버라시에서, 그 이후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어 적당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a)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서만 이용하는 것.

(b)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것.

(c) 남극지역에서의 국제적 과학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것.

(d) 이 조약 제7조에 규정된 조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

(e) 남극지역에서의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

(f) 남극지역에서 생물자원을 보존하는 것.

2. 일반국제법상 형사관할권

- 속지주의 (territorial jurisdiction): 남극조약 제4조 (영토주권 행사 금지)와 충돌
-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기국 또는 등록국 관할권 주장 가능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충돌 또는 그밖의 항행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기국에게 부여>)
- 적극적 속인주의: 자국 국민이 행한 위법행위 (자국의 통제하에 행하여진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타국민의 위법행위?)
- 소극적 속인주의: 타국 국민이 자국 국민에게 행한 위법행위
- 보호주의: 타국에서 타국민이 행한 내란, 위폐 등의 범죄
- 보편주의: 해적, 테러 등의 범죄

3. 형사관할권 경합시

- 국제법상 형사관할권의 중복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부재
- 국가간 사법공조협정 또는 정치적 합의에 따라 관할권 행사국 결정
- 피의자 신병의 확보, 증거 수집 및 증인 진술 확보 등의 용이성을 근거로 사건 발생지국이 우선적 행사 주장

- Q. 국가가 자국의 법집행권한을 가지 관리를 남극에 파견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가?



4. 남극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활동 가능성

- 남극지역에 자국 사법관리를 파견하여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가?
- 영토주권 주장국과의 마찰
- 집행관할권의 영역내 제한이라는 국제법원칙에 위반 여부
- 각 기지별 사법경찰권 행사가능자 임명 가능성?
- 탐험 또는 관광의 인솔자나 이들을 운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가능성?
- 각국 국내소송법상 제3국이 제공한 증거 및 증언의 인정 근거 마련 필요성?

- 미국 NSF의 법집행 프로그램(NSF's Law Enforcement Program in the Antarctic)
 - ✓ 1992년부터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법집행 프로그램 시행
 - ✓ 맥머드기지와 남극점기지 대장(station manager)을 특별 훈련후 연방보안관(US Marshals Service)이 특별보안요원(Special Deputy US Marshal)으로 임명
 - ✓ 연방법무부, 연방보안관, FBI의 지휘아래 자국민간의 24개 범죄를 범한 자국민에 대하여 체포 및 억류, 증거 수집 등의 행위 가능
 - ✓ 동 기능은 FBI 등이 남극에 파견되어 수사할 때까지 유지
 - ✓ 1996년 맥머드기지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실제 적용

IV. 우리나라 남극활동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남극조약체제 위반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 포함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예: 사적지 침해)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 ✓ 제2조 국내범: 속지주의
- ✓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적극적 속인주의
- ✓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의 외국인이 범한 죄: 준속지주의
- ✓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보호주의(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
- ✓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소극적 속지주의



■ 국제형사사법공조법

- ✓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
- ✓ 공조의 범위: 사람의 소재 수사, 서류/기록의 제공, 서류 송달, 증거 수집 및 인도 등, 진술 청취

■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 호, 불, 미, 중, 뉴질, 러, 브, 아르헨 등과 조약 체결

■ 형사소송법

- ✓ 제312조 이하에서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
- ✓ 검사 이외의 자가 작성한 신문조서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증거능력 인정
- ✓ 따라서, 제3국 이 제공한 증거 및 증언 등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매우 까다로운 상태

남극형사사건 유형별 우리나라의 관할권

✓ 우리나라 기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 우리나라 국민간 사건(단독 포함): 한국
- 우리나라 국민과 타국 국민간 사건: 한국과 타국민 국적국과 경합
- 타국 국민간 사건: 타국민 국적국간 경합

✓ 우리나라 기지외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 우리나라 국민간 사건(단독 포함): 한국
- 우리나라 국민과 타국 국민간 사건: 한국과 타국민 국적국과 경합

✓ 우리나라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

- 우리나라 국민간 사건(단독 포함): 한국
- 우리나라 국민과 타국 국민간 사건: 한국과 타국민 국적국과 경합
- 타국 국민간 사건: 한국과 타국민 국적국과 경합

✓ 우리나라 선박에 의한 충돌 등 항행상 형사사건: 한국

ICG의 활동 결과

- 남극에서의 관할권 분쟁은 ATCM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련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해결
- 다수의 의견은 별도의 ATCM 조치 대신에 남극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Case by Case 접근방식을 선호
- 현재의 실행방식 유지 희망
- 다만, 증거 수집, 남극을 위한 법적 기구 설치, 정보 교환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 필요성
- 프랑스가 각 당사국이 형사관할권문제 발생시 접촉할 수 있는 단일의 Contact Point 지명 및 회기중 비공식 정보교환회의 개최 제안

우리나라의 현황과 향후 과제

- 남극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상** 마련된 상태
- 남극조약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입법 완료
- 남극조약 주요 당사국과도 사법공조조약 체결
- 따라서 우리나라 단독관할권 행사 가능시에는 일방적 행사 가능
- 다만, 관할권 경합시 남극조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통한 해결 의무 발생
- 관할권을 집행하기 위한 남극지역에 대한 법집행세력의 전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거 부족
- 남극에서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선장과 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 부여로 해결

- 남극 기지대장에게 미국의 예에 따라 사법경찰권 부여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또한, 극지연구소 차원에서 기지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 작성 및 관련자의 훈련 필요
- 매뉴얼에는 보고절차, 용의자 또는 피의자 격리 절차, 증거 및 증언 확보 및 보관절차 등을 고려
- 동시에 남극기지내 범죄발생시 어떤 정부기관의 누가 현지내 수사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도 정부차원에서 검토 필요
- ICG의 활동 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관할권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contact point 지명에 대비한 검토 진행 필요
- 형사소송법절차상 타국이 제공하는 증거 및 증언의 처리절차 및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 필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